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기대효과

The Expected Effects of the Special Law in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 권정아, 김성민 / ETRI

I. 서 론

주파수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텔레비전 방송은, 대중 속으로 널리 확산되어 인류의 생활문화를 바꾸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온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들 중 하나이다. TV는 그간 흑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두 차례의 발전 단계를 거치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왔다.

특히 디지털 방송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부터 전송 및 수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통해 고화질(HD; High Definition)과 다채널, 그리고 데이터방송을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단방향의 일방적 서비스 수신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주문하는 양방향 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방송의 지평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TV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가정의 정보와 엔터

테인먼트 중심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이 제공하는 HD 방송은 이용자가 2.5배 정도 더 높은 효용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 내 친밀도가 높은 TV를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는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가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가용 주파수 대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TV 등의 가전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경제적 산업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 방송의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TV 부문에서 유럽은 다채널을 내세운 DVB-T 기술을, 미국은 고화질을 내세운 ATSC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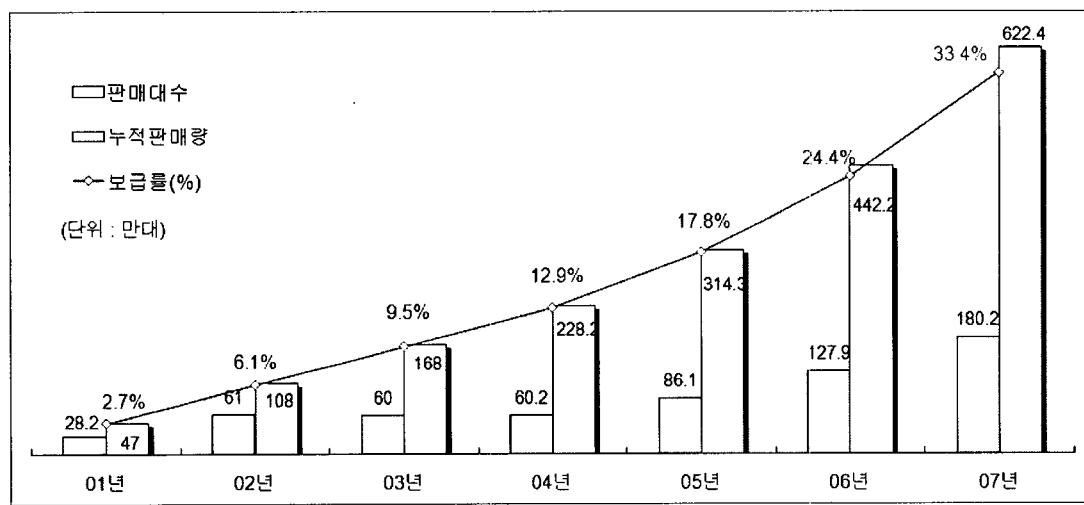
등 아시아 국가들도 방송의 디지털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정부는 방송사들에게 주당 최소 방송시간¹⁾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HD 방송을 실시하게 하고, 2012년 이후에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중단을 계획하는 등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우선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해 전송방식 결정이 지연되어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었다. 1997년 정보통신부가 지상파의 디지털 전송방식을 미국의 ATSC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와 기술인단체 등이 유럽의 DVB-T 방식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후 4년간

전송방식 논란이 지속되다가 DVB-T 방식의 이점인 이동성을 지상파 DMB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하며 2004년에 전송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디지털 TV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2007년까지 국내 디지털 TV 보급률(가구기준)은 33.4%인 반면, 영국과 미국의 디지털 TV 보급률은 각각 83%와 50%를 넘어서며 한국의 두 배 이상 수준을 기록하였다[1][2]. 한국보다 2년 늦은 2003년에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일본도 디지털 TV 보급률이 이미 51%를 넘어서었다[3]. 이처럼 국내 디지털 TV 보급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추세에 뒤쳐지고 있다.

1997년에 디지털 전환계획이 수립된 후, 2000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전환은 지연되어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입법화하였다. 2008년 2월에 통과된 ‘지상파 텔레비전



(그림 1) 국내 디지털 TV 보급현황

1) 2001년도의 최소 HD 방송시간은 주당 10시간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주당 13시간, 2005년 상반기에는 주당 20시간, 그리고 2005년 하반기에는 주당 25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으로 인해 법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4]. 특별법안은 정부 5개부처, 방송위,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 등 19개 기관이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하고 그 후 5개월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관련 부처의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국회의 입법처리가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더 늦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디지털 전환 특별법 사례와 국내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해외 디지털 전환 특별법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국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해외 디지털 전환 특별법 사례

세계 각국은 구체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영국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명확한 정책 목적에 기반해야 하고, 시장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여 전환을 추구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반면에 미국 등은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선도자로서 정부가 강력한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미국과 프랑스의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미국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은 ‘예산 조정법’의 일부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지된 아날로그 방송의 주파수 대역 경매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수된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파 공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날로그 방송은 2009년 2월 17일에 종료하고, 2008년부터 회수된 주파수 대역의 경매를 실시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과 공공안전 기금으로 조성한다. 국회 통상위원회는 세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회수된 주파수 대역의 경매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였다[5].

미국 내 가정이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구매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coupon)을 가구당

최대 2매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공안전기관이 무선 송수신을 위해 재할당된 공공안전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공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마련하였다. 또한 소출력 방송국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명시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성된 기금을 이용하거나 재무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추후 상환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였다[5].

미국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비교적 간명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재원의 확보와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확실한 근거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공공안전과 연결시켜 회수된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등이 특이점이다.

2.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2007년 2월에 ‘시청각 전송의 현대화와 미래의 텔레비전에 관한 법(LOI n° 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lévision du futur)’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별법에서 2011년 11월 30일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전 국민이 지상파의 보편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구역별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가 ‘공익그룹(Groupement d'intérêt public)’을 조성하여 아날

로그 방송의 종료과정에서 시청자가 방송 수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말에 약 20개 채널이 디지털로 전 지역에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상파 방송의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료로 위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수한 화질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5].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통해 명시하였다. 방송 서비스 배급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수신기기와 전환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신기기 제조업자도 향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수신 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5].

프랑스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기술·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이 용이한 SD급 방송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HD급 고화질 방송을 차세대 방송 모델로 간주하고 특별법을 통해 방송서비스 편성 사업자에게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개인 모바일 방송도 향후 중요한 방송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모바일 텔레비전 출범 조건들을 마련하는 등 기초적인 작업을 법을 통해 명시하였다[5].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국의 방송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된 특별법은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를 열기 위한 방송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포석을 마련하였다.

III. 국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만을 골라내

어 특별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1조). 일반법인 방송법이나 관련부처의 디지털 전환계획으로는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6].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정 명시,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및 안내문 부착, 저소득층 지원 방안,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함으로써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방송 수상기의 보급률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을 규정하는 것에 비해 디지털 전환을 일정 부분 강제하여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보급률에 기초할 경우,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연기하고, 디지털 전환이 연기되어 시청자들은 디지털 TV 수상기 구매를 미루고, 방송사업자는 디지털 방송설비 투자에 미온적이어서 보급률 증가가 둔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선진 각국도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표 1〉 각국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

국명	아날로그 종료 시작	아날로그 종료 완성
미국	2009. 2. 17.	2009. 2. 17.
독일	2003. 8.	2007.
영국	2005. 3. 30.	2012.
스웨덴	2005. 9.	2008. 3. 1.
핀란드	2007. 8.	2007. 8.
일본	2011. 7.	2011. 7.

종료 시점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지역별 순차 종료가 시행되고 있다.

2.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도록 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구매한 시청자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디지털 수상기의 보급을 확산하고 아날로그 종료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시행 일정

대상 수상기	시행 기한
76cm 이상 TV 수상기	2008. 7. 1.
63cm~76cm 미만 TV 수상기	2009. 1. 1.
63cm 미만 TV 수상기	2010. 1. 1.
관련 전자제품	2010. 1. 1.

미국도 텔레비전 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 단계별로 디지털 튜너 장착을 의무화하여, 아날로그 종료를 2년 앞둔 2007년 3월 1일까지 완료하였다[7].

〈표 3〉 미국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시행 일정

대상 수상기	시행 기한
36" 이상 TV 수상기	2005. 7. 1.
25"~35" 이하 TV 수상기	2006. 3. 1.
24" 이하 TV 수상기	2007. 3. 1.
관련 전자제품(VCR 등)	2007. 3. 1.

또한 대만도 2010년 1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디지털 튜너 내장을 시행하고 있다[8].

(표 4) 대만 디지털 투너 내장 의무시행 일정

대상 수상기	시행 기한
29" 이상 TV 수상기	2006. 1. ~
21" ~ 29" 이하 TV 수상기	2007.
21" 미만 모든 TV 수상기	2008.

3.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 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 방송의 수신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제조사 및 수입 유통사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구매자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 홍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아날로그 TV 수요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0월 22일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아날로그 TV에 부착하여 판매 중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판매점에 배포하여 전시 중이다[9].

4.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지상파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후 디지털 TV 수상기를 갖추지 못한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경제적인 지원책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은 빈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여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초기에 셋톱박스를 임대구매 형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지상파 방송만을 수신해 온 저소득층 가구에게 셋톱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셋톱박스 구매 비용의 75%)을 보조하였다[10].

영국은 7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TV 수신 장치를 제공하고, 생활 보조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평균 4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11].

5.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방송을 위해 2000~2005년 동안 7,658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2011년까지 총 1조 49억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비해 HD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12].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수입은 광고단가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정하고 있어 디지털 투자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또한 수신료도 정부규제에 묶여 1981년 이후로 동결되어서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법안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양질의 고화질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되고 디지털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주파수를 할당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였고, 일본은 세제상의 우대정책과 융자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13].

(표 5) 주요국의 방송사업자 지원내용

국가	정부지원 내용
미국	- 주파수 경매제 추진을 포기하고 무료로 주파수를 할당하여 간접적 지원
영국	- BBC가 송출기능을 매각하여 전환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
프랑스	- 정부가 10억 프랑 지원 -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합작을 통해 고비용 문제 해결
일본	- 정부가 '98년 350억엔, '99년 2,000억엔 지원 - 국가가 민간설비투자의 1/3 부담 - 디지털 관련투자에 저리율과 세제상의 우대조치
호주	- 정부가 공영방송 재정지원

6.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의 개선, 그 밖에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수신 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상파 방송국의 출력한계로 인해 자연적 난시청이 발생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를 포함한 도시에서는 고층건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이 어려운 인위적 난시청 지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수신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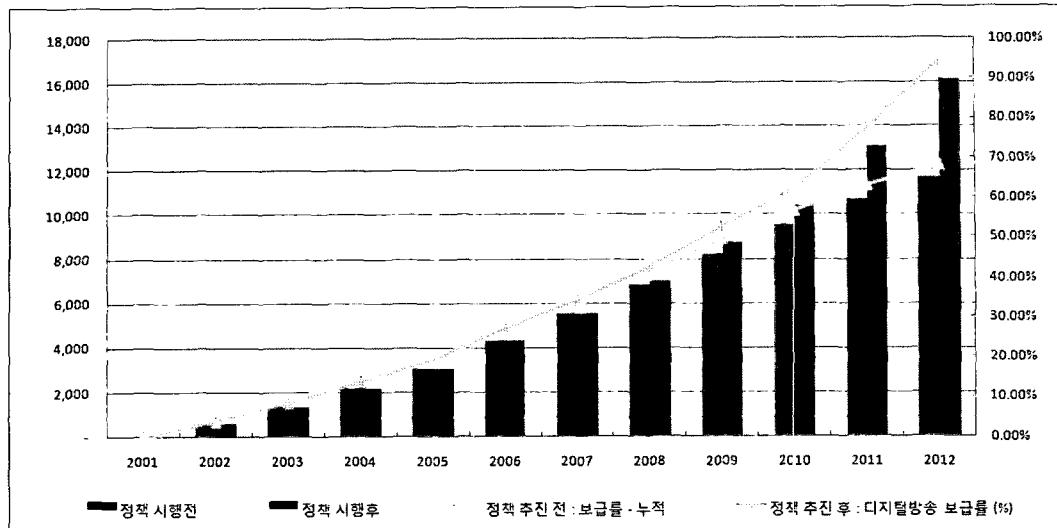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환경개선과 난시청지역 해소는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기회 증진과 시청자 복지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시청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통해 디지털 방송의 수요를 확대시켜 지상파 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IV. 기대효과

특별법안은 그동안 늦어진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의 정책시행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를 전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정책시행 전 후의 2012년 디지털 전환율을 비교해보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68%, 특별법안의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는 94%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디지털 방송 전환이 특별법안의 정책을 통해 가속화됨을 보여준다. 정책시행 후의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시,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시행과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증가를 반영하였다. 향후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홍보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의 고화질·고음질 서비스와



<그림 2>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표 6>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만가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책 시행 전	수신 가구	686	822	954	1,071	1,166
	보급률	42%	49%	57%	63%	68%
정책 시행 후	수신 가구	701	875	1,043	1,312	1,614
	보급률	43%	53%	62%	77%	94%

T-Commerce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시청자들은 디지털 고화질 방송에 대해 월 6,360원을 수신료로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큰 효용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4].

국가 경제적으로도 디지털 TV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TV, STB, PVR 등 관련장비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되어 디지털 가전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경제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

털 방송의 활성화는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방 산업군에 대한 수요기반도 확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격,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것이다.

또한 회수된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이 동시전송되고 있어 주파수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해 가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고, 회수된 주파수를 신규 통신, 방송 서비스 및 재난방송 등 공익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텔레비전 방송은 1980년에 흑백방송이 컬러방송으로 전환된 이래, 20년 넘게 별다른 발전을 보여주

지 못했다. 방송 이외의 다른 매체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고품질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 선명한 화질과 5.1채널 이상의 고음질을 제공하여 시청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TV를 통한 양방향 데이터방송, T-commerce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미래의 방송으로 진화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가정 내 친밀도가 가장 높은 텔레비전을 디지털화하고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에 따라, 소외계층도 디지털 방송의 효용을 누릴 수 있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시켜 계층간 정보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방송 전환은 시청자 복지의 증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기기 시장의 규모확대는 관련 전방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디지털 전환은 과거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해 4년간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었고, 방송사업자는 불확실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고품질 프로그램의 편성을 어렵게 하였고, 고가의 디지털 수상기 비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디지털 콘텐츠 부족으로 디지털 방송만의 차별성을 경험하기

어려워 디지털로 전환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디지털 전환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특별법안은 디지털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방송사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 방송 수상기 구매를 부담스러워 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비용 대비 혜택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안은 부족한 부분의 개정과 시행령 제정 등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해 방송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안에서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하위 20% 이내에 속한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대안 등도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면밀한 정책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여 원활한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는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하는 공익적인 요구와 디지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적인 요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전환 정책이 초기의 디지털 수상기 보급위주의 산업 정책에서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가 가장 우선시되는 공익정책으로 진화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별법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청자 복지위주의 공익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OFCOM, "Switchover Progress Report Q4 2007 : Digital UK and Ofcom Switchover Tracker Survey", 2008.3.4
- [2]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http://www.ce.org>
- [3] "새 정부 디지털 TV 보급 '고삐'", 아시아경제, 2008.2.11
- [4] "디지털 전환 특별법, 국회 방통특위 통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8.2.22
- [5] 방송위원회, "미국과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방송조사자료 2007-1호, 2007.9
- [6] 정용준, "디지털방송특별법의 정책 쟁점 분석", Digital Media Trend 07-02호, pp5-21
- [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fcc.gov>
- [8] "Cabinet launches move to digital TV", The Taipei Times, 2005.12.22
- [9] 총무성, <http://www.soumu.go.jp>
- [10] 최용준, "디지털 방송 정책과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11] Ofcom, "Digital Switchover(Disclosure of Information) Act 2007", 2007.7.18
- [12] 한국전파진흥원,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연구", 2007.2.18
- [13]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9
- [14] 유승훈, 변상규,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7년 여름호 제5-3호, pp.7-49

필자 소개

권정아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사
- 2007년 2월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e-biz 경영학 석사
- 2007년 4월~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연구원
- 주관심분야 : 디지털방송, 경제성분석, 산업분석

김성민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2000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2000년 1월~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디지털방송, DMB, 경제성분석, 산업분석, 마케팅전략